

의안번호	2211400
의 퇴 인	윤영석 의원
회 답 일	2025. 7. 25.
추계번호	25F3680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출산·양육 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출산·양육 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에 따라 취득세는 2026년 569.5억원, 2027년 569.5억원 등 2026~2027년까지 2년간 총 1,139억원(연평균 569.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개정안은 출산·양육을 위해 비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100% 면제로 확대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으나, 이를 예측할 수 없어 동 비용추계는 과소추계 되었을 가능성 존재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, 2026~2027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누적	연평균
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(제36조의5)	-569.5	-569.5	-1,139.0	-569.5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6조의5 (출산·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)	○ 출산 가구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취득세 감면 확대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 12. 31. → (개정안) 2027. 12. 31. - 비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100% 면제 추가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36조의5 (출산·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부칙에 따라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세수효과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발생한다고 가정
- 출산·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 효과는 2024년 취득세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지자체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 출산·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실적은 569.5억원 수준
 - 비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100% 면제 확대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으나, 이를 예측할 수 없어 동 비용추계는 과소추계 되었을 가능성 존재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추계방법

- (제도 개요) 출산·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(안 제36조의5)
 - 주택의 취득 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(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 취득 포함) 산출세액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
 - － 취득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: 취득세 100% 면제
 - － 취득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: 취득세 500만원 공제
 - 개정안은 비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100% 면제로 확대
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 12. 31. → (개정안) 2027. 12. 31.
 - － 현행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
 - 본 조문은 2023년 12월 29일 신설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

- (감면 실적) 출산·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실적은 2024년 569.5억원 수준
 -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은 2024년 취득세 감면실적은 13,391건, 569.5억원이며 이는 잠정치로 향후 「지방세통계연감」 수치와 다를 수 있음
 - 현재 동 조문의 감면실적은 「지방세통계연감」으로 확인 불가

[표 2] 출산·양육 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실적: 2024년

	2024
감면건수(건, A)	13,391
감면액(억원, B)	569.5
건당 감면액(만원, B/A)	425

주: 2024년 감면실적은 지자체 제공자료로 향후 발표되는 「지방세통계연감」 수치와 다를 수 있음
 자료: 지자체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추계방법) 향후 취득세 세수효과는 2024년 감면실적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출산·양육 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은 2024년 취득세 감면 실적인 569.5억원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동 조문은 2024년부터 시행

(2) 추계결과

- 출산·양육 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에 따라 취득세는 2026년 569.5억원, 2027년 569.5억원 등 2026~2027년까지 2년간 총 1,139억원(연평균 569.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개정안은 출산·양육을 위해 비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100% 면제로 확대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으나, 이를 예측할 수 없어 동 비용추계는 과소추계 되었을 가능성 존재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, 2026~2027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누적	연평균
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(제36조의5)	-569.5	-569.5	-1,139.0	-569.5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